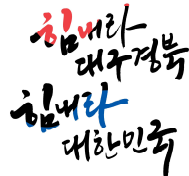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29(수) 총 10매(본문 8매)	
담당 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윤종수, 서기관 한동균, 사무관 정은선, 주무관 신한나, 허동혁 • ☎ (044) 201-3224, 3235, 4816, 4817, 4818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9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- 민간 투자환경 개선, 소상공인·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4.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,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, 7+7 혁신과제*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
* (범정부) 드론, 자율차, 스마트시티, 수소경제, 데이터, 산업단지, 미래 모빌리티
(국토부) 입지, 건축, 건설, 생활교통, 주거복지, 부동산 산업, 물류

-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'20.3월 출범한 「국토교통 규제혁신 TF」 내 7+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·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.

- 특히,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·법률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(4.22)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.
-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①민간 투자환경 개선, ②영세업자 부담완화, ③국민생활 불편개선, ④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·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올해 법령·시행령·시행규칙 까지 확대하고 7+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.

-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① 민간 투자환경 개선

▶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 완화(시행령개정, '20.9)

- (현황)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/2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*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.

* 복합용지(산업시설과 타기능의 복합 허용)의 총면적은 산업시설용지 총면적의 50% 이하

- (개선) 이에 산업단지 중 이중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.

▶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(행정규칙 개정, '20.8)

- (현황) 시험용 레벨3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.

* 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

- (개선) 이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▶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7)

- (현황)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,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다.

- (개선)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·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

▶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 확대(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'20.8)

- (현황)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해당시설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다.

- (개선) 이에 도시공원·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·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.

*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선 필요성 등 검토完(∼'20.4)

▶ **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**(공문송부, '20.5)

- (현황)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.

* 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: 산불의 진화·예방, 산림 방제·순찰 등

- (개선)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(유권해석)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▶ **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장 설치 허용**(시행규칙 개정, '20.6)

- (현황)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의 유치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.

- (개선)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인다.

▶ **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7)

- (현황)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 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.

* 필수시설 : 주차장, 휴게실, 샤워실, 식당, 주유소 및 정비소

임의시설 : 세탁실, 수면실, 체력단련실, 세차기,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

- (개선) 이에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,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한다.

▶ **패트롤 로봇의 공원주행 실증특례**(규제샌드박스 협의, '20.4)

- (현황) 30kg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, 범죄 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의 규제특례 건의가 있었다.

- (개선) 안전관리, 통행구간 등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면 도시공원에서 실증이 허용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(과기부)와 협의한다.

② 소상공인·영세업자 부담완화

▶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(인하시행, '20.5~6월)

- ☐ (현황)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.
- ☐ (개선)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수수료를 5~6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.(개인·중소·중견기업 대상)

* 수수료 인하방안 : 개인 및 중소·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30% 인하(기간: 5월~6월, 3억 원 한도)

▶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8)

- ☐ (현황) 건설기계 부품생산 활성화로 종합·부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요건인 선반·정반장비* 소유 필요성이 다소 낮아진 실정이다.

* 선반·정반: 각종 기계부품 등을 정밀 가공하거나 조립·검사하는데 사용

- ☐ (개선) 이에 기성부품 공급이 충분한 일부 정비업(덤프 등)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반·정반 보유 제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▶ 건설기계 등록말소 범위 확대(공문송부, '20.4)

- ☐ (현황) 건설기계를 횡령·편취당한 경우, 등록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보험료·세금·소유권 분쟁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다.
- ☐ (개선) 횡령·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 하되 우선 적극행정(유권해석)으로 말소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.

▶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7)

- ☐ (현황) 여러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·상호만 변경 되어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각각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다.

- (개선) 이에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,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지자체에 일괄 통보토록 개선한다.

▶ **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6)

- (현황) 택시운수종사자가 관할 시·도를 옮기는 경우 다시 시험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필요하였다.
- (개선) 여객운송법규,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
▶ **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**(공고, '20.7)

- (현황)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시 관련비용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폐기물 종류별 단위발생량 제시 등 표준품셈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정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다.

3 국민생활 불편개선

▶ **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완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6)

- (현황)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되어 개·보수가 어렵고 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.
- (개선)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·개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▶ **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**(법·시행령 개정, '20.下)

- (현황) 스마트도시 규제특례(혁신·실증사업) 신청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, 신청 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중복되었다.
- (개선) 이에 규제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, 사업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.

▶ **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**(시행규칙 개정, '20.7)

- (현황)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㎡ 이상의 근린공원,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
- (개선) 이에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.

▶ **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**(지침 개정, '20.6)

- (현황)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,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,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.

▶ **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**(시행령 개정, '20.9)

- (현황)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.
- (개선) 이에 화훼판매시설 설치주체를 농업협동조합,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·허용갯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.

▶ **용지 공급가격 인하로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**(지침개정, '20.6)

- (현황) 지자체 재정한계로 공공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주차난 발생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였다.
- (개선)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.

▶ **축사시설의 처마·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**(공문송부, '20.4)

- (현황) 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한 처마,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(개선) 적극행정(유권해석 등)을 통해 차양,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.

4 불합리한 규제개선

▶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(법 또는 시행령 개정, '20.下)

- ☐ (현황)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·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 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,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었다.
- ☐ (개선)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'착공신고 전'으로 조정 하여 사업기간 단축,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.

▶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(시행령·지침 개정, '20.6)

- ☐ (현황)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시 일정 수 이상 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에 우선배정하여 중소·개인업자의 참여가 어려웠다.

* 대형법인 배정물량: '17년까지 100%, '18년 98.7%, '19년 98%, '20년 95%

- ☐ (개선) 소속평가사 수 요건 및 대형법인 우선배정 폐지를 통해 공 시업무 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체 차별을 해소한다.

* 중소기업체(61개)에 물량(358억) 20% 참여 전제 시, 법인당 평균 1.2억원 연매출 증가

▶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(공문송부, '20.4)

- ☐ (현황) 고층(11층 이상 등)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 산정 시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.
- ☐ (개선) 적극행정(유권해석 등)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.

▶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(시행령 개정, '20.8)

- ☐ (현황)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/2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부재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.
- ☐ (개선)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, 위반행위를 즉시 정정 또는 시정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구체화·명확화할 계획이다.

▶ **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변경**(시행령 개정, '20.8)

- (현황) 집단에너지 열공급 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.

* 점용허가 대상에는 '열수송관'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 '열수송시설'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 지 해석이 불분명

- (개선) 이에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.

▶ **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개선**(시행령 개정, '20.8)

- (현황)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 '데이터 센터'의 특징*을 반영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.

* 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축물

- (개선) 이에 시설물 특성·주차유발 정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.

▶ **건설업 등록관련 행정정보 이용확대**(시행규칙, '20.6)

- (현황) 건설업 등록신청 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확인을 위해 고용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다.

- (개선) 이에 고용보험가입증명서도 등기사항증명서, 주민등록표 초본 등과 같이 행정공동이용정보와 자동연계 되도록 개선한다.

-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.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 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한동균 서기관(☎ 044-201-32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

주요과제명(목표시기)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① 민간 투자환경 개선			
▪ 산업단지 복합시설 용지 면적제한 완화(시행령 개정, '20.9)	산업입지정책과	김근오 과장 김성환 서기관	044-201-3674 3677
▪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 (행정규칙 개정, '20.8)	첨단자동차기술과	이창기 과장 이정규 사무관	044-201-3847 3852
▪ 목조건축 높이기준 완화로 목조산업 육성(시행규칙 개정, '20.7)	건축안전과	홍성준 과장 김준 사무관	044-201-4987 4989
▪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 확대 (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'20.8)	도시정책과, 녹색도시과	이상주 과장 성호철 과장 장혁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06, 3742 3710, 3749
▪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장 설치 허용 (시행규칙 개정, '20.6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▪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완화 (공문송부, '20.5)	첨단항공과	문석준 과장 신경 사무관	044-201-4307 4315
▪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 (시행규칙 개정, '20.7)	물류시설정보과	한성수 과장 박정곤 사무관	044-201-4006 4009
▪ 패트롤 로봇의 공원주행 실증특례 (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의견제시, '20.4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② 소상공인·영세업자 부담완화			
▪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한시적 완화 (30% 인하(3억원 한도), '20.5~6)	녹색건축과	김유진 과장 백승관 사무관	044-201-3768 3772
▪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(시행규칙 개정, '20.8)	건설산업과	최임락 과장 유연형 사무관	044-201-3538 3544
▪ 건설기계 등록말소 범위 확대 (공문 송부, '20.4)	건설산업과	최임락 과장 유연형 사무관	044-201-3538 3544
▪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 완화 (시행규칙 개정, '20.7)	물류시설정보과	한성수 과장 김선욱 사무관	044-201-4006 4007
▪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6)	도시교통과	박건수 과장 김동규 사무관	044-201-3797 4757
▪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(공고, '20.7)	기술기준과	박명주 과장 강지연 사무관	044-201-3561 3570

주요과제명(목표시기)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3 국민생활 불편개선			
·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 완화(시행규칙 개정, '20.6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·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완화(법·시행령 개정, '20.下)	도시경제과	이익진 과장 김세묵 사무관	044-201-4845 4842
·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 (지침 개정, '20.6)	주거복지정책과	김석기 과장 박승연 사무관	044-201-4504 4740
·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(시행령 개정, '20.9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심인보 사무관	044-201-3742 3745
·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(시행규칙 개정, '20.7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· 용지 공급가격 인하로 인한 공공주차장 확보(지침 개정, '20.6)	부동산개발정책과	오성익 과장 권지현 사무관	044-201-3434 3438
· 축사시설의 처마·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 완화(공문 송부, '20.4)	건축정책과	김성호 과장 오승열 사무관	044-201-3755 3759
4 불합리한 규제개선			
·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지기 조정(법 또는 시행령 개정, '20.下)	건설안전과건축안전과	한명희 홍상준 과장 한창 김준 사무관	044-201-3573 4987 3584 4989
·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(시행령 개정, '20.8)	부동산산업과	유혜령 과장 주광돈 사무관	044-201-3411 3413
·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(시행령·지침 개정, '20.6)	부동산평가과	신광호 과장 염광은 사무관	044-201-3422 3426
·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 및 층수 완화 (공문 송부, '20.4)	건축정책과	김성호 과장 오승열 사무관	044-201-3755 3759
·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 점용허가 대상 변경(시행령 개정, '20.8)	녹색도시과	성호철 과장 김의연 사무관	044-201-3742 3749
·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(시행령 개정, '20.8)	도시교통과	박건수 과장 강준식 사무관	044-201-3797 3814
· 건설업 등록 관련 행정정보 이용·확대 (시행규칙 개정, '20.6)	건설산업과	최임락 과장 김학원 서기관	044-201-3538 3509